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9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10일
발의자 : 원병일,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최성임, 이도재
박성찬, 김영실, 김진희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
- 나.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아동”을 “아동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를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을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2호 중 “수행하기어려운”을 “수행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회의에”를 “회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5. 법 제19조에 따른 <u>아동</u>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p> <p>6. ~ 8. (생략)</p> <p>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u></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u>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p>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아동의</u>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등) ① ----- ----- --- <u>15명</u> ----- -----.</p> <p>② ----- ----- <u>위원 중에서 호</u> <u>선한다.</u></p> <p>③ ----- ----- ----- <u>시 소속 공무원</u> <u>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u></p> <p>④ ----- ----- -----</p>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 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신설>

<신설>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 제6호까지 -----
-----.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 사회복지학 · 심

4. (생략)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3. (생략)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해촉) -----

-----.

1. (현행과 같음)

2. -----
----- 수행하기 어려운 -----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 회의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면 또는 유선-----.

④ -----
----- 시작하고-----

으로 의결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생략)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과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에 대한 심의를 하며 그 외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② -----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시 세출 예산의 경우 기존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에서 위원 수 변동 및 회의 개최 수에 따른 일부 변동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작성자

복지국 여성아동과장 이 인 애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